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계약목적)

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제 6 조 (이용계약)

① 주(야)간보호·방문요양 등 이용계약(서약)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.

1. 계약기간
2. 계약목적
3.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5. 계약의 해제
6.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

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1부
2.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
3.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
4.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

제 7 조 (계약기간)

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


제 8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주·야간보호,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6%, 9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
-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 1. 식재료비
 2. 아·미용비
 3.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
- ④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.
-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.
-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 9 조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)

-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
-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 2.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3. 이용자가 사망한 때
 4.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 5. 이용자가 입소(이용)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(이용)규정을 위반한 때
 6.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 7.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
-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

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

삼덕노인복지센터

제 11 조 (계약의 정지)

제71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(이용자)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입소자 등의 권리와 의무)

이용자 및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
-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
-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
-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

제 14 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이용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이용자의 건강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제공 의무
-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이용자 비용 부담 의무
-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연락의 의무
- ④ 보호자 부재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-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퇴소절차, 비용 등의 부담 의무
- ⑥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
- ⑦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알 권리
- ⑧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
- ⑨ 이용자의 부당대우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

제 15 조 (시설의 권리와 의무)

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
-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
-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
- ④ 이용자,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,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



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

삼덕노인복지센터